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 호

항공안전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에 따라, 항공전문 의사를 다음과 같이 신규 지정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.

2023년 4월 12일

국토교통부장관

□ 신규지정(3명) 및 취소(1명)

구분	성명	지정번호	소속기관	전공분야
신규지정	이만우	335	연세우리건강내과	내과
신규지정	조성민	336	강북삼성병원	직업환경의학과
신규지정	임정구	337	델타피부과	피부과
취소	신석우	315	아이엠씨강남의원	일반외과